

2021년 복무제도 개선사항 안내

1. 안식년휴가제 대상 확대

□ 주요내용

○ 확대대상 : 근속 5년 직원

구 분	현 재	개 선
대 상	근속 10년·20년·30년	근속 <u>5년</u> ·10년·20년·30년

※ 근속년수는 ERP > HR > 인사정보 > '실근속년수' 적용

○ 휴가일수 : 「안식년휴가 5일+개인 연차휴가 5일」 함께 사용 (분할 사용 불가)

○ 사용시기 : 근속 5년 도래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, 사용

- 해당 근속 도래일로부터 1년내 미사용시, 안식년휴가 청구권 소멸
- 회사 업무 사정에 의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기간만큼 최대 1년 이내 기한 연장 가능

✓ 근로조건 등 기타사항은 기존 안식년휴가제 대상자와 동일 기준 적용
(단, 근속보로금은 지급하지 않음)

□ 신청경로 : HR>개인업무>복무/출장>복무통합관리>휴가

※ 대상자 限 사용시기 1개월 전부터 '안식년휴가' 표시

2.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의무화

□ 대 상 :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임신 여직원

□ 주요내용

현 재	개 선
직책자에게 신청 후 일 3시간 단축 근무 (임신정보 등록 후 별도 신청승인)	직책자에게 별도신청 없이 일 3시간 단축 근무 (임신정보 등록시 시스템상 자동 신청승인)

※ 근무유형(5시간 근무) : A(08~14시), B(09~15시), C(10~16시), D(11~17시)

※ 보수 등 기타 근로조건은 정상근무시와 동일

□ 신청경로 : HR>개인업무>복무/출장>복무통합관리>유연근로>임신정보등록

3. 반차제도 개선

□ 대 상 :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또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

□ 주요내용

구 분	현 재	개 선
반차휴가 사용한도	최대 14회 (연차휴가 7일 분할)	최대 20회 (연차휴가 10일 분할)

- ※ 1. 부여된 연차휴가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
 2. 근무시간 : 오전반차(14~18 시), 오후반차(08~12 시)

4. 부서장 재량 포상휴가 신설

□ 주요내용

구 분	현 재	개 선
사유	•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현저한 공적을 세운 직원에 대하여 필요시	• 좌 동 • (추가) 부서장 ¹⁾ 재량으로 직원 사기진작 필요시
부여일수	• 직원 1인당 연간 최대 7일 이내	• 좌 동

¹⁾ 부서장 : 팀장, 부장, 담당, 지점장, 지사장, 센터장 등 복무를 관리하는 직책자

□ 신청경로 : HR>관리업무>복무>부서장재량포상휴가 (부서장이 신청)

※ 부서장이 신청 시, 시스템상 자동승인되어 직원의 휴가신청 현황에서 부여내역 표시

5. 유연근로제 개선

□ 주요내용

- (구)선택근로제, Core-time근로제, 가족사랑유연근무제 통합 및 선택근로제로 일원화
- 재택근무와 연계 사용 및 필수근무시간 폐지를 통한 근로시간 유연화

구 분	현 재			개 선	비 고
	선택근로제	Core-Time 근로제	가족사랑 유연근무제	선택근로제 ^{통합}	
대 상	전 직원	전 직원	임신·육아기 등	전 직원	유사기준 통·폐합
근로형태	주단위 소정근로시간 내 자율	출퇴근±2시간	주단위 소정근로시간 내 자율	주단위 소정근로시간 내 자율	
일근로시간	최소 4시간	8시간 고정	최소4시간	최소 4시간	
근로시간대	06시~20시	07시~20시	06시~20시	06시~20시	
필수근무	11~15시	X	11~15시	폐지	근로시간 유연화
재택근무	X	X	○ (09~18시)	○ (08~19시)	-
신청단위	월	월	주	주	-

※ 재량근로, 간주근로, 탄력근로 등 기타 유연근로제는 기존 제도 유지

□ 신청경로 : HR>개인업무>복무/출장>복무통합관리>유연근로>통합선택근로제

2021년 복무제도 개선사항 Q&A

[1] 안식년휴가

Q1 근속 5년 안식년휴가의 '21년 대상자는 누구인가요?

A1

- 2021.1.1일자 기준 실근속년수가 만5년 도래한 직원부터 해당 (소급불가)
- 2021년의 경우, 2016년 입사자 해당 (근속년수는 'HR>인사정보'에서 확인가능)

Q2 안식년휴가 도래 시점에 휴직 중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?

A2

- 장기휴가, 휴직, 재직전출, 파견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복귀 또는 복직일로부터 1년 이내 안식년휴가 사용 가능

장기휴가	휴직
출산전휴휴가, 공상휴가 限 (병가제외)	육아휴직, 창업지원휴직, 리프레쉬휴직

Q3 안식년휴가를 줄여서 사용하거나 분할사용 가능한가요?

A3

- 줄여서 사용하거나 분할사용 불가
- 단, 전년도 휴직이나, 당해년도 일반병가로 안식년휴가와 함께 사용해야 할 연차휴가 일수가 부족한 경우 限 '안식년휴가 + 잔여 연차휴가' 일수 내에서 사용가능

Q4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신청기간 내 미사용 시 추후 신청 가능한가요?

A4

- 근속 5년 도래일로부터 1년 이내 개인사정으로 미사용 시 회사에서 부여하는 안식년 휴가부여일은 소멸되므로 추후 신청불가
- (예시) 2016.1.4일 입사자의 경우, '안식년휴가 5일 + 연차휴가 5일'을 안식년휴가 사용기간 (2021.1.4~2022.1.3)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함

Q5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안식년휴가 사용기한 연장이 가능한가요?

A5

- 2020.2~2021.6월 기간 내 안식년휴가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직원에 대하여 사용기한을 2021.6월 말일까지로 일괄 연장 조치하였으며, 추후 코로나 확산 추이에 따라 재연장 여부 검토예정

[2]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의무화

Q6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- 'HR>개인업무>복무/출장>복무통합관리>유연근로>임신정보등록'에서 출산예정일 정보와 병원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 파일 업로드 후

A6 *근무유형을 선택하면 복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기간 근로시간 단축 적용 (별도 복무신청/승인절차 없음)

*근무유형(5시간 근무) : A(08~14시), B(09~15시), C(10~16시), D(11~17시)

[3] 반차휴가

Q7 초등이하 자녀 직원 여부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?

- A7**
- 'HR>개인업무>인사정보>가족사항'의 정보 기준으로 적용
 - 수정 필요 시, 해당 메뉴에서 수정 가능 (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필요)

Q8 2021년도 기준 '만12세 이하' 자녀의 출생연도는 어떻게 되나요?

A8 • 2009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경우, 만 12세 이하에 해당됩니다.

[4] 선택근로제

Q9 선택근로제 이용하는 주에 대체휴무·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시간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?

- A9**
- 주40시간에서 대체휴무·휴가에 의한 근로시간을 차감하여 선택근로제 운영
 - 예를 들어, 월요일 대체휴무, 수요일 연차, 금요일 반차 이용한다면 주 40시간 중 대체휴무·휴가에 의한 시간 (20시간^{대체휴무8시간 연차8시간 반차4시간})을 제외한 20시간으로 근로시간 계산
 - ✓ 선택근로제 신청·승인 이후 휴가(연차·반차)를 신청하는 경우, 근로시간 현행화 필요

Q10 선택근로제를 이용하면서 재택근무도 동시에 이용 가능한가요?

- 08~19시 범위 내에 재택근무는 동시에 이용 가능
- 단, 해당일에 소정근로시간은 모두 재택근무로 운영

A10 재택근무 신청경로

- 선택근로제 사용자: '복무/출장>복무통합관리>유연근로>통합선택근로제'
- 선택근로제 미사용자: '복무/출장>복무통합관리>유연근로>재택근무'

Q11 선택근로제를 10 to 7으로 이용 중인데 반차사용 시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?

- 선택근로제 사용유무와 관계없이 반차사용 시의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음

A11

오전반차	오후반차
14시 ~ 18시 근무 (4hr)	08시 ~ 12시 근무 (4hr)